

481.270

# 납입고지서 재중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본 청

## 납입고지서

|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회 원 명             | 서울 본 청  |                | 회 원 번 호            | 241110000438 |
| 납 부 금 액           | 398,970 |                | 납 부 기 한            | 2024-03-31   |
| 가상계좌번호            | 농 협     | 79015973613649 | 가 상 계 좌 주<br>예 금 주 | 서울본청         |
| 청 구 내 역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납 부 내 용          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   |
| (건물시설물) 서울창업센터 관악 | 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398,970      |

2024 년 3 월 25 일

한국지방재정공제회



## 안내말씀

- 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-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10자 이내)
- 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은행거래시 1계좌당 최대 10억까지 입금 가능합니다.
-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, 단체상해공제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 가능합니다.
- 문의전화 : 수도권광역센터 02-3274-2603/2604 중부권광역센터 044-868-9471/9472  
영남권광역센터 053-431-3016/3017 호남권광역센터 062-385-7411/7412

## 납입고지서 재중

한국지방재정공제회는 「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」 제16조에 따라 재해복구, 손해배상 및 단체상해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기관입니다.

서울 본 청

### 납입고지서

|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|
| 회 원 명                   | 서울 본 청 |                | 회 원 번 호       | 244110000321 |
| 납 부 금 액                 | 82,300 |                | 납 부 기 한       | 2024-03-31   |
| 가상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| 농 협    | 79014504800157 | 가 상 계 좌 예 금 주 | 서울본청         |
| 청 구 내 역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|
| 납 부 내 용                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금 액          |
| (영조물) 서울창업센터 관악(청사)외 2건 |        |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| 82,300       |

2024 년 3 월 20 일

한국지방재정공제회



### 안내말씀

- 위 납부할 금액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.
- 가상계좌는 회원 및 납부내용별 각각 다르게 부여된 계좌이므로 반드시 본인의 납부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. ※ 수납은행이 아닌 타은행 이용 시 송금수수료는 본인 부담
- 지방재정관리시스템(e-호조)을 이용하여 공제회비를 납부하는 경우, e-호조 시스템에 입력한 예금주명과 납입고지서의 가상계좌 예금주가 정확히 일치하여야 납부가 가능합니다.(띄어쓰기 없이 10자 이내)
- 입금한 금액이 납부금액과 불일치할 경우 입금처리가 되지 않으니 이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타은행거래시 1계좌당 최대 10억까지 입금 가능합니다.
- 가상계좌 납부 시 별도 연락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
- 납부유예는 건물시설물재해복구공제규정 제50조, 손해배상공제규정 제16조, 단체상해공제규칙 제3조의2에 의거 공제기간 내 신청 시 가능합니다.
- 문의전화 : 수도권광역센터 02-3274-2603/2604 중부권광역센터 044-868-9471/9472  
영남권광역센터 053-431-3016/3017 호남권광역센터 062-385-7411/7412